

<중앙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>

1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- 1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
- 2)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- 3) 월 이용료 및 기타 자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.

구 분		1등급	2등급	3~5등급
요양 급여	노인전문요양시설(구 노인복지법) 노인요양시설(개정법)	65,190	60,490	55,780
비 급 여	상급침실 이용료	2인실 50,000원		
		1인실 300,000원		
	식재료비	1식 2,500원 × 3식 = 7,500원		
	간식비	1,000원		
	이/미용료등			

2. 계약자의 의무

‘갑’과 ‘을’ 그리고 ‘병’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< ‘갑’의 의무>

- 1) 월 이용료 납부
- 2)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- 3)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- 4)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- 5)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
< ‘을’의 의무 >

- 1) ‘갑’의 건강관리 협조
- 2) ‘갑’의 신변이상을 ‘병’에게 즉시 연락
- 3)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
- 4)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- 5) 기타 ‘갑’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< ‘병’의 의무>

- 1) ‘갑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- 2) ‘갑’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
- 3)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- 4) '갑'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'을'에게 통보
- 5)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
3. 계약해지 요건

<'갑'의 해지>

- 1) '갑'과'병'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'을'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<'을'의 해지>

- 1) '갑'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2)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- 3) '갑'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'을'은 '갑'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'갑'또는'병'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4. 퇴소

- 1) '을'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'갑'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2) '갑'과'병'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,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'을'에게 제출하고 '을'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 단,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'병'(또는 '갑')에게 통보 후 '을'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'갑' 또는 '병'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- 3) '을'은 '갑'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'갑'이 지정한(또는 '병')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

4. 이용료 및 비용변경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
- 1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2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3)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- 4)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이전의 입소보증금은 퇴소시 지불한다.